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商標登録無効

〈大法院 第2部判決 1978.1.10〉

裁判長: 大法院判事 임 항 준

關與法官: "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1. 審判請求人(上右人): 제네랄후즈코포레션 代表 나타리·엠·워리맨(美 뉴욕州화이트프레이즈市)
2. 被審判請求人(被上告人): 大韓綜合食品樣式會社 代表理事 김 인 득
(서울 中區 乙支路 2街 296-2)
3. 原審決: 特許局 1977.2.28字 74抗告審判 330號 審決
4. 主文: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負擔으로 한다.

5. 理由

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 第1點을 判斷한다.

原審決에서 “GENERAL FOODS”는 우리나라의一般去來者나 需要者로서는 그것이 “綜合食品”을 뜻하는 것으로理解하고 있으므로 이는 商品의 性質內容을 表記한 것일뿐 自他商品을 区別시킬 수 있는 商標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라는 상표로서의 자타상품을 区別시킬 수 있음에 필요한 標識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見解를 說示한 것으로 볼 것이며 그렇다고 심판청구인이 登錄商標 “GENERAL FOODS”的 상표로서의 効力を 否定 또는 默殺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反對의 見地에서 원심결理由에 矛盾이 있다고 하는 論旨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本件商標의 構成中の 中間部가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 “GENERAL FOODS”와 같은 文字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상품의 성질내용을 表記한데 지나지 않아 상표로서의 표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訴論 본건상표의 要部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趣旨이고 본건 상표는 그 구성에 있어서는 단순히 “GENERAL FOODS”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머리부분에 “Korea”를 뒷부분에는 Co,Ltd를 結合하고 있어서 “GENERAL”과는 差異點이 있으므로 類似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審理判斷을 遊脫한 것이 되거나 舊商標法 第5條第1項

11號의 規定을 그릇 適用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敗訴者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参考—

□ 抗告審判: 1974년 항고심판 제330호, 심판청구인 제네랄후즈코포레션, 피심판청구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主文: 본건항고심판청구는 成立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판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初審: 1974년 심판 제259호, 심판청구인 제네랄후즈코포레션, 피심판청구인 대한식품주식회사

主文: 심판청구인의 신청은 성립할 수 없다. 심판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國) (外) (事) (件) —

商標權侵害와 權利濫用의 抗辯

(日本 東京地法 1978年 5月12日 判決, 1976年(外)第7799號)

1. 原告: 平和堂貿易(株)

2. 被告: (株)다이헤이

3. 判決主文

被告는 別紙目錄記載의 標章을
붙인 時計를 輸入하고 讓渡하거나
양도를 위하여 展示해서는 안된다.

피고는 그 所有에 관한 前項記載의
시계를 廢棄하라.

訴訟費用은 피고의 負擔으로 한다.
이 判決은 假執行할 수가 있다.

4. 事件概要

平和堂貿易(株)인 X는 外國製時
計등의 輸入販賣 및 시계등의 製造
販賣를 業으로 하는 會社이며 別紙
商標權을 岡田某의 出願登録(1956
年 10月 15日登録)에 관한 것을 訴
外 A가 讓受하여 이를 다시 A로
부터 X가 양수한 다음 1976年 3
月 22日 移轉登録을 끝낸 現在의
本件 商標權者이다.

한편 (株)다이헤이인 Y는 皮革,
織布, 代學合成布地의 가방, 손가
방등 가방과 其他 雜貨物의 製造販
賣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Y는 1976年 初부터 繼續하여 X
의 상표와 비슷한 同一文字標章인
CONTINENTAL을 붙인 손목시계
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X는 Y의 標章이 自己의

본건 상표와 同一 類似하므로 本商
標權에 의거한 停止 및 廢棄를 請
求하였다.

이에 대해 Y는 본건 상표권이 X
에 양도되기 전부터 본건 상표를 사
용하고 있지 않았음을 理由로 1974
년 12월 20일에 取消審判을 청구하
여 현재 審理中에 있으므로 이같은
權利에 의거한 정지, 폐기청구는
권리의 濫用임을 抗辯하였다.

X는 Y의 항변에 대하여 X가
舊會社로부터 營業讓渡를 받은 1972
년 12월 1일 이후는 그 본건 상표의
사용을 계속하여 왔다고 主張하였
다.

5. 判決要旨

X의 本件 商標權은 前 所有者
A가 스위스의 某會社에게 使用을
許諾하였었다.

그러나 A를 거쳐 X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文字商標인 本건 상표와
A가 이전에 사용허락하여 사용하
고 있던 상표가 基本的構成이 共通
되고 呼稱, 觀念이 同一하여 外觀
도 去來上 實質의 差異가 없다.

본건 상표의 登錄이 不使用을 이
유로 早晩間 取消될 運命에 놓여
있는지 明白히 斷定할 수 없으므로
Y의 抗辯은 餘他의 절에 대해 判

斷할 것도 없이 排斥을 免할 수가
없다.

따라서 本訴請求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認容하고 主文대로
判決한다.

6. 解說

Y의 주장은 X가 本건 상표권을
讓受하기 이전의 前主人이 本건 상
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
로서 取消審判을 提起하고 있음을
들어 스스로의 侵害責任을 모면하
려는 事例이며 그 法的根據를 권리의
남용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本건에서의 Y의 주장은
침해를 모면하기 위한 항변으로서
X의 權利濫用을 주장함은 지나친
행위이며 X가 Y의 利益을 해칠
不正한 目的이 없는 本건에서는 권
리의 남용이라고 할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無効, 取消 등의 심
판청구와 侵害訴訟裁判은 別個의
獨立機關이며 制度이므로 後者에서
前者의 이유를 주장함으로써 책임
을 모면하려고 권리남용을 주장함
은 不當하다는 與論이다.